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편 드 명 | BNK은퇴디자인배당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 |
| 정 정 서 류 | (간이)투자설명서 |
| 정 정 사 유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|
| 효 력 발 생 일 | 2023년 01월 27일 |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[요약정보] | | | |
| 투자비용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운용전문인력 | - | - | -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매입방법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 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
| 환매방법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| 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|

[투자설명서]

| 항목 | 정정사유 | 정정 전 | 정정 후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[요약정보] | | | |
| 투자비용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익률)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운용전문인력 | - | - | -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매입방법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 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|
| 환매방법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| 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|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- | - | - 2023.01.27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- | - | -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①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| 가. 투자 대상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] (1) 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 ①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 |

| | | | |
|--|--|--|---|
| | | <p>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②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③ ~ ⑪ (생략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⑫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(1)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</p> | <p>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②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③ ~ ⑪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"자산유동화증권"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⑫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</p> <p>(1)BNK중기증권모투자신탁1호(채권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</p> |
|--|--|--|---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<p>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</u>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 <p>(2)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</u>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 | <p>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</u>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③ ~ ⑧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(주식)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습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른 <u>한국주택금융공사</u> 또는 <u>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</u>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③ ~ ⑧ (현행과 동일)</p> |
|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| <p>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</p> |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</p> | <p>가. ~ 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</p>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| 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3.93%</u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1.12.05</u>) | 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4.6026%</u> 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5등급(낮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결산일 : <u>2022.12.05</u>) |
| 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생략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생략)</p> <p>(4) ~ (5)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5영업일(D+4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8) (생략)</p> <p>다. (생략)</p> | <p>가. 매입</p> <p>(1) ~ (2) (현행과 동일)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</p> <p>(다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~ (5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5영업일(D+4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3) ~ (8) (현행과 동일)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 |
| 12. 기준가격 산정 기준 및 집합투자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|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재산의 평가 | | 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 | 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)에서 부채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)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- 보수 및 수수료 부분 비용 관련 주석 추가 |
|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 | 가. 이익배분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 나. 과세 (생략) | 가. 이익배분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(현행과 동일)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
| - |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| - | 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- | - | - 2023.01.16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- 의무해지 (생략) - 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 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 | - 의무해지 (현행과 동일) - 임의해지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 제 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|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| | 지 하여야 합니다. | 하여야 합니다.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|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</u>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 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</u>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 |

<끝>.